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멕시코,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 시 라벨링 준수 철저



- 멕시코의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는 시판되는 라면 제품의 품질조사 결과 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 조치한다고 밝힘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는 한국 라면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문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1)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라벨 표기
 - '달 라면'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닭고기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음
 - 제품 이미지에 당근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당근은 함유되어 있지 않음
 - (2) 과다 함유된 영양성분의 경고 스탬프 미표기
 - 주요 내용(멕시코 식품 라벨링 주의사항)
 - 관련 규정: 멕시코 공식표준(NOM-051-SCFI/SSA1-2010)
 - 필수 표기 정보: 제품명, 성분 목록, 섭취방법,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배치번호,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제품의 총량
 - 영양성분 경고 스탬프: 2020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과다 함유된 영양성분은 제품 포장 전면에 경고 스탬프를 표시해야 함

TBT

이슈
바로가기

출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 Revista del Consumidor, 2021.10.01
BBC News, México retira 130.000 sopas por información engañosa, 2021.10.05

중국, 치즈의 국가표준 개정안 11월부터 본격 시행



- 치즈의 사용기준을 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치즈(GB5420-2021)》이 202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주요 내용(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규정 변동 사항)
 - 특정한 맛의 기타 식품 원료와 유착방지 기능이 있는 원료 사용 시 첨가량은 8%를 초과하면 안 됨 (두가지 원료를 동시에 사용 시 첨가된 성분 총량도 8%를 초과하면 안 됨)
 - 치즈 제품에 대한 효모, 곰팡이균의 미생물 제한기준 삭제
 - 제품 라벨에 운송과 보관 온도를 표기해야 함
 - 제품명 앞에 제품의 경도 및 지방함량을 추가할 수 있음
- (*) 치즈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임
- (*) 시행일: 2021년 11월 22일

TBT

이슈
바로가기

출처: Antion consulting, 【权威】进出口食品安全：干酪国家标准GB 5420变化早知道, 2021.10.05

대만, 영유아 조제식품의 통합 라벨링 규정 초안 발표



- 영유아 조제식품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4가지 라벨 표기 규정을 통합한 《영유아 조제식품의 라벨 표시 주의 사항(초안)》을 발표함. 초안이 시행되면 기존 규정은 폐지될 예정임
- 주요 내용(초안의 구성 내용)
 1. 초안의 법적 근거(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10호)
 2.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외포장 표시 내용에 대한 공통 규격
 3. 영유아 연령대에 따라 종류가 다른 조제식품의 표시 규정
 4. 영유아 조제식품의 표시 금지 내용에 대한 규정
 5. 영유아 조제식품 표시 내용의 제품검사등록심의 승인 필요 규정
 6. 규정 미준수 또는 허위, 과장, 오인 표시 내용에 대한 처벌 규정
- [부록]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첨부되는 인식 라벨 이미지 및 관련 정보
- (*) 시행 예정일: 현재 공개 의견 수렴 기간으로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음
- (*) 영유아 조제식품은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며,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TBT

이슈
바로가기

출처: 대만 FDA, 預告訂定「嬰兒與較大嬰兒配方食品應加標示事項」草案, 2021.09.30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캐나다 보건부,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의 글루타미나제 사용 허용

- 캐나다 보건부는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의 글루타미나제를 일부 식품의 식품 효소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허용된 식품 효소 목록'을 수정하겠다고 밝힘
- 다른 미생물 공급원의 글루타미나제는 특정 식품에 이미 사용이 허용되어 있음
- 주요 내용(변경 사항)
 - 허용 성분 :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의 글루타미나제
 - 사용 기준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최대 수준으로 사용
 - 사용 대상 품목 : 빵과 밀가루·통밀가루, 가수분해된 동물성·우유·식물성 단백질, 유제품 기반 향미제, 파스타, 비표준화된 베이커리 제품, 효소 추출물

SPS

(*) 시행 일정 : 2021년 10월 4일



출처 : 캐나다 보건부,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Food Enzymes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 in various foods-- Reference Number: NOM/ADM-0174 [2021-10-04], 2021.10.04

캐나다 보건부, 포장 전면의 영양 라벨 표시 규정을 포함한 식품 규정 개혁 절차 마무리 중

- 주요 내용(식품 규정 개혁 추진 사항)
 - 사전포장 식품에 과다 함유된 나트륨, 포화지방, 설탕은 포장 전면에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 FDR에서 영양소 함량 강조표를 폐지하고 해당 표를 참조로 통합
 - 특수 고강도 감미료의 라벨링 요건 폐지
 - 부분 경화유(PO)사용 금지에 따라 필수 비타민 D 강화 및 FDR의 기술 수정 사항 재정비

TBT

출처 : FOOD in CANADA, Regulatory Affairs: Revising nutrient claims, 2021.10.07

유럽위원회, Regulation (EU) 2021/1110의 수정 MRL 적용 기준 변경

- Regulation (EU) 2021/1110은 2021년 7월 발행된 일부 살균제 성분의 최대 잔류 한계량 기준(MRL) 수정안으로, 수정된 내용은 Regulation (EC) No 396/2005에 적용될 예정임
- 대상 성분 :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페나자퀸(fenazaquin), 스피네토람(spinetoram), 테플루트린(tefluthrin), Bixafen, thiencazabone-methyl
- 주요 내용(변경된 내용)
 - 수정안의 적용 대상
 - (기존) Regulation (EU) 2021/1110이 적용되지 않은 (EC) No 396/2005은 **2021년 7월 27일** 이전에 연합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계속하여 적용됨
 - (변경) Regulation (EU) 2021/1110이 적용되지 않은 (EC) No 396/2005은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연합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계속하여 적용됨

SPS



출처 : EUR-LEX, Corrigendum to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110--thiencazabonemethyl in or on certain products, 2021.09.23

유럽위원회, 3-(1-((3,5-dimethylisoxazol-4-yl)methyl)-1H-pyrazol-4-yl)-1-(3-hydroxybenzyl)imidazolidine-2,4-dione을 유럽연합 향료 목록에 추가

- 유럽연합의 사용가능 향료 목록 : Regulation (EC) No 1334/3008의 부록1
- 주요 내용(해당 성분의 사용 제한량)
 - 카테고리 1.4(맛을 첨가한 발효유 제품): 4mg/kg
 - 카테고리 1.8(유제품 유사 제품): 8mg/kg
 - 카테고리 5.1(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15mg/kg

SPS

(*) 발효일 : 2021년 10월 10일 (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이후)

출처 : Epingalert, G/SPS/N/EU/490/Add.1, 2021.09.30